

수원지방법원 2022. 10. 25 선고 2021가단566252 판결 [연대보증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1. A조합

2. B조합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현

담당변호사 오주영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희

변 론 종 결 2022. 8. 16.

판 결 선 고 2022. 10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 A조합에 46,468,042원, 원고 B조합에 47,549,1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. 11. 11.부터 2022. 10. 25.까지는 연 8%의, 2022. 10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2/5는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, 원고 A조합에 75,339,642원, 원고 B조합에 77,072,9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. 11. 1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 A조합(이하 ‘원고 A조합’라 한다)는 2019. 10. 17. 주식회사 D에 8억 원을 대출(이하 ‘이 사건 제1대출’이라 한다)하였다. 이 사건 제1대출 당시 이자율은 3개월 변동의 자금조달비용지수(COFIX)금리(신규)에 연 3.98%를 가산하기로 하고 연체이자율은 위 이자율에 연 3%를 가산하기로 약정하였다.

나. 원고 B조합(이하 ‘원고 B조합’이라 한다)는 2019. 10. 17. 주식회사 D에 8억 원을 대출(이하 ‘이 사건 제2대출’이라 한다)하였다. 이 사건 제2대출 당시 이자율은 3개월 변동의 자금조달비용지수(COFIX)금리(신규)에 연 3.98%를 가산하기로 하고 연체이자율은 위 이자율에 연 3%를 가산하기로 약정하였다.

다.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은 평택시 F 대 750.3㎡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의 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2019. 10. 17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, 2대출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, 피고는 2019. 10. 17. 이 사건 제1, 2대출의 대출금 채무를 각 9억 6,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(이하 ‘이 사건 연대보증’이라 한다)하였다.

라. 주식회사 D은 2020. 6. 16.까지 이 사건 제1대출의 원리금과 이 사건 제2대출의 이자를 각 상환하였다. 이후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제1대출의 원리금, 이 사건 제2대출의 이자 상환을 연체하여 2020. 8. 17. 이 사건 제1, 2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.

마. 2021. 11. 10. 기준 이 사건 제1대출의 원금 잔액은 782,214,400원, 이자(연체이자를

제외한다) 잔액은 53,378,230원, 연체이자 잔액은 28,871,600원이고, 이 사건 제2대출의 원금 잔액은 800,000,000원, 이자(연체이자를 제외한다) 잔액은 54,828,420원, 연체이자 잔액은 29,523,780원이다.

바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21. 11. 10. 원고 A조합은 이 사건 제1대출금 중 789,124,588원을, 원고 B조합은 이 사건 제2대출금 중 807,279,285원을 각 배당받았다.

사. 2021. 11. 10. 이후 현재까지 자금조달비용지수(COFIX)금리(신규)에 연 3.98%를 가산한 이율은 연 5% 이상이다.

[인정 근거] 공지의 사실, 갑 제4, 5, 6, 8, 12, 14, 22, 23, 25, 26, 29, 3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제1, 2대출 사실, 피고가 이 사건 제1, 2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, 2021. 11. 10. 기준 이 사건 제1대출의 원리금 잔액이 864,464,230원이고 이 사건 제2대출의 원리금 잔액이 884,352,200원인 사실, 21. 11. 10. 원고 A조합가 이 사건 제1대출금 중 789,124,588원을, 원고 B조합이 이 사건 제2대출금 중 807,279,285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조합에 2021. 11. 10. 기준 이 사건 제1대출 원리금 잔액에서 789,124,588원을 변제충당한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, 원고 B조합에 2021. 11. 10. 기준 이 사건 제2대출 원리금 잔액에서 807,279,285원을 변제충당한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대출의 이자율이 3개월 변동의

자금조달비용지수(COFIX)금리(신규)만이라고 주장하며 위 인정 사실 중 이 사건 제1대출의 이자율에 관한 부분을 일부 부인한다.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제1대출 약정서의 이자율란에 가산금리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나 갑 제26,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의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제1대출을 받음에 있어 자금조달비용지수(COFIX)금리(신규)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결의를 한 사실, 원고 A조합은 이 사건 제1대출 이후 이자율을 3개월 변동의

자금조달비용지수(COFIX)금리(신규)에 연 3.98%를 가산한 것으로 관리하였고 주식회사 D도 위와 같은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이와 같은 사실을 참작하면, 위 인정 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한 이자율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- 1)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약관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이를 설명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.
- 2) 원고들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아야 함에도 담보제공자인 피고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무효이다.
- 3) 보증인 보호를 위반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원고들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무효이다.
- 4) 원고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았음에도 피고의 경솔과 무경험을 이용하여 추가로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.
- 5)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피고가 연대보증임을 알지 못하고 착오에 빠져 한 것이거나 원고들의 기망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.
- 6) 원고들이 주채무자의 1개월 이상 채무이행 지체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체이자에 대한 보증책임은 면책된다.
- 7)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배당받음으로써 이 사건 제1, 2대출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.

나. 판단

- 1) 갑 제8,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이에 반하는 피고의 제2의 가 1)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 - 2)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제1, 2대출에 관하여 물적 담보를 제공한 자는 주식회사 E이고 연대보증인은 피고이므로 담보제공자와 연대보증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제2의 가 2)항 주장은 이유 없다.
 - 3)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,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나,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채무자인 주식회사 D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제2의 가 3)항 주장은 이유 없다.
 - 4)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, 2대출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제2의 가 4)항 주장은 이유 없다.
 - 5)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피고가 연대보증임을 알지 못하고 착오에 빠져 한 것이라거나 원고들의 기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제2의 가 5)항 주장은 이유 없다.
 - 6)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2, 4항에 따르면,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,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채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.
- 주식회사 D이 2020. 6. 17.부터 이 사건 제1대출의 원리금, 이 사건 제2대출의 이자 상환을 연체한

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고, 이와 같은 연체 사실이 기재된 소장 부분이 2021. 11. 10.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. 이와 같은 사실을 위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보면, 주채무자인 D이 이 사건 제1, 2대출금 채무를 1개월 이상 연체한 2020. 7. 17.에는 지체 없이 그 연체 사실을 보증인인 피고에게 알렸어야 함에도 2021. 11. 10.에서야 이를 알렸으므로, 피고는 2020. 7. 17.부터 2021. 11. 10.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채무를 면한다(원고들은 갑 제19, 20, 21호증을 근거로 위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, 갑 제19, 20, 21호증의 수취인,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위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).

7) 2021. 11. 10. 기준 이 사건 제1대출의 원금 잔액은 782,214,400원, 이자(연체이자를 제외한다) 잔액은 53,378,230원이고, 이 사건 제2대출의 원금 잔액은 800,000,000원, 이자(연체이자를 제외한다) 잔액은 54,828,420원인 사실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21. 11. 10. 원고 A조합이 이 사건 제1대출금 중 789,124,588원을, 원고 B조합이 이 사건 제2대출금 중 807,279,285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다.

위 인정 사실에서 본 2021. 11. 10. 원고들이 변제받은 돈을 이 사건 제1, 2대출금 잔액의 이자,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하면, 2021. 11. 10. 기준 이 사건 제1대출금 원금 잔액 46,468,042원, 이 사건 제2대출금 원금 잔액 47,549,135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소결

결국, 피고는 원고 A조합에 46,468,042원, 원고 B조합에 47,549,1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. 11. 11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. 10. 25.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8%의, 2022. 10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

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정엽